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제한토론 관련 제도 변경〉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4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45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안)	1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안)	3
III. 검토의견	4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 · 문정복 · 김우영 · 이개호 · 안도걸 · 주철현 ·
정준호 · 박지원 · 김문수 · 최혁진 · 이성윤 의원(11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0.

다. 회 부 일 : 2025. 10. 13.

※ 의안번호 : 1350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 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

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

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금주 · 이재강 · 주철현 · 박균택 · 이병진 · 문대림
서삼석 · 박용갑 · 김승원 · 권향엽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31.

다. 회 부 일 : 2025. 11. 3.

※ 의안번호 : 1384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제106조의2).

Ⅲ. 검토의견

1. 무제한토론 사회자 확대(민형배·문금주의원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민형배의원안),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문금주의원안).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민형배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며,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법 상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은 의장에게 있는데, 의장이 사고¹⁾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등의 선거 시에는 최다선의원(연장자順)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경우에도 의장과 부의장만이 교대로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음.

[표-2] 의장의 사회권 및 직무대리(대행) 관련 국회법 규정

국회법 규정	내용
제10조	◦ 의장의 직무(국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사무감독권)
제12조	◦ 의장 사고 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
제13조	◦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 선출하여 직무 대행
제18조	◦ 의장 등 선거 시 최다선의원(연장자順)이 직무 대행

1) 사고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일체의 사고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의장의 신상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또는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상의 사고이며, 신병 또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면담 또는 외빈 예방 등의 사유로 일시 의장석을 떠나는 경우 등은 사실상의 사고라 할 것이다.(국회법해설 72p)

제22대국회 무제한토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약 16개월간 총 16건의 안전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고, 대부분이 이틀 이상 연속해서 진행되었음.

[표-3] 제22대국회 무제한토론 실시 현황

안 건	토론 일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3.(수) 15:39 ~2024. 7. 4.(목) 17: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목) 17:30 ~2024. 7. 26.(금) 18:0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금) 18:16 ~2024. 7. 28.(일) 01:0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8.(일) 01:08 ~2024. 7. 29.(월) 08: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월) 08:32 ~2024. 7. 30.(화) 09:14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8. 1.(목) 14:53 ~2024. 8. 2.(금) 15: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금) 16:33 ~2024. 8. 3.(토) 23: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월) 16:00 ~2025. 8. 5.(화) 16: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화) 16:50 ~2025. 8. 5.(화) 23: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목) 10:42 ~2025. 8. 22.(금) 11: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3.(토) 09:09 ~2025. 8. 24.(일) 09: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4.(일) 09:41 ~2025. 8. 25.(월) 10:02

안 건	토론 일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목) 18:29 ~2025. 9. 26.(금) 18:58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9. 26.(금) 19:03 ~2025. 9. 27.(토) 19: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7.(토) 19:36 ~2025. 9. 28.(일) 20: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8.(일) 20:18 ~2025. 9. 29.(월) 20:45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민형배의원안은 이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제한토론의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장에게 예외적으로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문금주의원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보도록 하여 부의장이 임의적으로 사회를 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안 대해서는 ① 현행 국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임시의장과 동일한 정족수(재

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로 선출²⁾된다는 점,

문금주의원안에 대해서는 ① 부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사회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의장이 국회의장단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게 하고, 무제한토론 사회자들의 체력적 부담을 완화시켜 무제한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³⁾.

한편,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⁴⁾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사회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회법」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3) 2016년 2월 26일 무제한토론 중 정의화 의장이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하였음.

4)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2.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선포 규정 신설 (민형배의원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민형배의원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③ (생략)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u>계속한다</u> .	④ ----- ----- ----- -----, ----- ----- ----- ----- <u>계속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 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 할 수 있다.</u>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국회법」 제73조⁵⁾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본회의를

5)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생략)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의할 수 있다는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면서 회의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그러나 무제한토론의 경우, 장시간 회의가 계속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73조제3항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에도 일반적인 회의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의원이 이석하여 무제한토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무제한토론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②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현행 국회법 제73조제3항본문에서는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의무적으로”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하도록

6) 회의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때마다 회의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한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의사정족수 충족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2000. 2. 16.)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의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문금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하고,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문금주의원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를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⑥ ----- ----- -----지체 없이 표결----- -----3분의 1 이상----- -----. ----- -----.

현행법⁷⁾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終結動議)가 가결되는 경우

- 7)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를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이 종결됨.

개정안은 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 방법인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변경하고, ②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각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래와 같음.

우선, ①과 관련하여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전자투표(기록표결)로 전환할 경우 의원 개개인의 투표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표가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져 본회의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무기명투표에 비해 전자투표는 정당의 의사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의원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⁸⁾ 무제한토론의 도입취지, 투표방식별 장·단점, 현행법상 투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투표방식 전환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참고로, 「국회법」은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음.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표-6] 국회법상 안건종류별 투표방식

내 용	투표방식	비 고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무기명투표 (수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투표 (수기)	-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무기명투표 (수기)	-
법안등의 일반안건	전자투표	개별의석 전자표결기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본회의 의결 이 있거나 재적의원 1/5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시 전자장치 이용한 투표 가능 (제112조제9항)
헌법개정안	기명투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밖의 인사에 관한 안건	무기명투표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무기명투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무기명투표	
탄핵소추안	무기명투표 (수기)	-

다음으로, ②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무제한토론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제출요건⁹⁾과 동일한 점, 무제한토론은 소수파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기

9)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하여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으로 도입된 점, 현행법상 의결정족수 규율체계 등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일반 안전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안전에 대해 이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 구성과 관련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제외한 안전은 재적의원 또는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음.

[표-7] 현행법상 안전별 의결정족수

구분	의결정족수	안전
일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일반 안전
특별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① 국회의원 제명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③ 헌법개정안 의결 ④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⑤ 안전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 ⑥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의결 ⑦ 위원회 회부된 선거구 확정안 재제출 요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① 신속처리안전지정동의 의결 ②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①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②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③ 계엄 해제요구 ④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② 번안동의 의결

구분	의결정족수	안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다수표	① 국회의장 · 부의장 결선 투표 ② 임시의장 선거 ③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④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대통령당선자 결정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

한편, 개정안과 같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의사정족수를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9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 제한(문금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실시 대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제외하려는 것임.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문금주의원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u><신 설></u>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⑪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u>

현행법¹⁰⁾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¹¹⁾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부회의 대상인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에는 법정 예산안 의결기한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무제한토론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취지를 존중

10)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11)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라6, 2020헌라1(병합))에 따라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 대상이 되지 않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중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희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경우 재석위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로써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인원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014, 5015